

취약사업장 23,000여개 근로감독 실시

- 근로조건을 기업이 먼저 자율점검 하는 방식 도입

노동부는 근로자들의 최소근로조건 확보를 위해 근로시간·최저임금 위반이나 임금체불이 우려되는 사업장 등 23,000여 개소에 대하여 '08년 근로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작년 18,470개소 보다 25% 늘었다.

감독대상에는 기존의 비정규직 다수 고용 사업장 등 5대 취약계층과 근로시간 등 3대 취약분야 외에 용역·건설·IT업종 등이 새로 취약분야에 포함되었다.

또한, 노동부 본부에서 취약분야별로 일정 비율의 점검목표를 배정하는 방식에서 지방노동관서장이 자율적으로 점검 분야와 사업장 수를 조정하도록 함으로써 근로감독의 역량을 현장 실정에 맞추어 필요한 곳에 집중 투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 노동부는 4.24. 이와 같은 내용의 “사업장근로감독 종합시행계획”을 지방관서에 내려 보냈다.

노동부는 감독대상을 넓히는 대신 그 대상이 대부분 영세사업장으로 사업장감독에 대한 업무부담이 크다는 점을 감안하여 점검목

표의 50% 범위 내에서 자율점검을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따뜻한 노동행정을 구현한다는 방침이다.

자율점검제는 법 위반이 많은 사항을 중심으로 노동부가 점검표를 작성 배포하고, 사업장 스스로 법 위반 여부를 점검한 후 개선계획을 제출하면 근로감독관이 개선결과를 확인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또한, 노사가 합동으로 실시하거나 지역의 다양한 사업주단체 등으로부터 조력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자율점검 하에서도 개선계획을 제출하지 않거나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 허위보고 또는 개선계획기간 중 신고사건이 접수된 사업장에는 한층 강화된 현장감독을 실시하여 전체적인 근로감독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작년 한 해 동안 20,224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하여 14,953개소에서 39,615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을 적발, 이 중 38,749건을 시정하고 218건에 대하여는 사법처리하거나 과태료·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한 바 있다.

노동부, 병원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하여 사업주가 지켜야 할 산업안전보건법 안내자료 발간

노동부는 병원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하여 사업장에서 꼭 알아야 할 내용을 담은 “의료기관 보건관리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주요내용” 안내 책자를 5월 2일부터 발간 배포한다고 밝혔다.

책자의 주요 내용은 사업장 보건관리체계, 작업환경측정, 건강진단 및 병원체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등 산업안전보건법규이며,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요약하여 정리하였다.

또한 다양한 유해·위험인자들을 자체적으로 파악·관리하는데 필요한 “병원 산업보건 checklist”를 제공하여, 병원 보건관리자들이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

고자 하였다. 그간 병원 및 의료산업의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인식 및 관련 법령에 대한 인지도가 낮다는 지적에 따라, 금번 안내 자료를 발간·배포하게 되었다.

노동부는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의료기관, 협회, 관련단체 등에 안내책자 1800부를 배부할 예정이며, 상시근로자 50인 이하 규모의 의료기관에는 보다 간단한 리플렛 형태로 2만부의 자료를 보급할 예정이다.

이번에 발간하는 안내 자료를 통해 병원 사업주의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한 이해증진을 도모하여, 병원 종사 근로자의 건강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